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주간보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등급 (L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기 타	☐ 일반 ☐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마라나타노인 주간보호센터	시설종류	주간보호
	시설장 성명	고숙현 (인)	연락처	T.062-714-2508 F.062-710-2501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163-1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24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오후	시	분	~	오전 오후	시 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 공휴일 제공여부
토		

-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당월 29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

- 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③ ‘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마라나타노인주간보호센터 계좌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 ① ‘을’은 ‘갑’ 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법,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 제19조 (기타)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변’ 대리인(보호자) (인)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본 센터에서는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2.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3.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4.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1.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2.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3.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4. 장기요양계획,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1. 보존년 5년 - 장기요양 급여계약 및 이용에 관한 정보 (계약서,제공기록지,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2. 계약 만료(해지)시 까지 - 보존년한 5년 이외의 모든 정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시·군·구/ 건강보험공단/ 업무관련 기관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이용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년 월 일

생년월일 :

어르신 성명 : (서명)

보호자 성명 : (서명)

마라나타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의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보호자에게 연락드립니다

보호자 성명:

집 전화번호:

보호자 핸드폰:

* 만약 보호자에게 연락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께서 추천하신 다음 사람에게 연락드립니다

어르신과의 관계:

연락처:

* 어르신께서 편찮으시거나 위독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정한 의료기관이나 본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거나 119구조대에 응급이송 합니다.

의료비는 보호자 부담입니다. 다만 본 기관에서 배상책임 보험에 해당될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 귀댁의 의료보험 정보를 알려주시면 불의의 사고 시 또는 의료기관 수송 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종류:

의료보험 번호:

의료보험 기관:

귀 기관에서 위의 사항에 따라 응급처치와 치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 그 권리를 귀 기관에 위임합니다.

2024 년 일 일

어르신주민등록번호: -

어르신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어르신들은 노령으로 인해 골다공증 등 각종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낙상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본 시설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의 세심한 관리와 노력, 어르신들의 보호 의무에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낙상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독자적인 행동, 돌발행동으로 인한 낙상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의 근거가 어르신에게 있기에 책임의 제한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동의서

마라나타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 및 위급상황의 빠른 대처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건물 내,외부 CCTV 촬영 및 물리치료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1. 건물 내,외부 11개의 CCTV를 촬영중이며,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2. 물리치료실의 CCTV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물리치료실의 CCTV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고, 서명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물리치료실 촬영에 대한 동의/ 반대 표시
		☐ 동의합니다 ☐ 미동의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마라나타노인주간보호센터(2-29140-00280)
- 동의(미동의) 기간: 2024 . . . ~ 2024 . . .
※ 이용하여 생활 중 동의(미동의)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

2024 년 월 일

생년월일 :

어르신 성명 : (서명)

보호자 성명 : (서명)